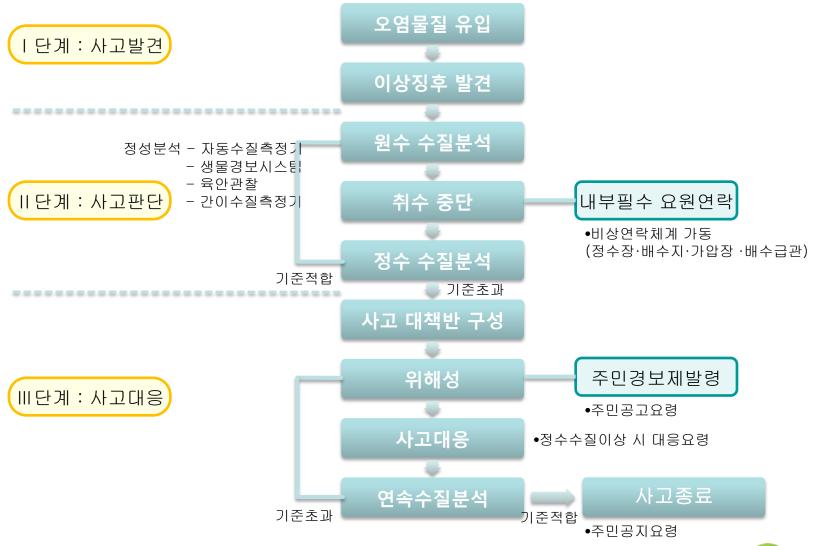
● 취 · 정수장 사고 방제 흐름도





1) 취수장 인근에 오염물질 유입

- 오염 물의 띠 유하시간을 고려하여 취수구 주변에 오일펜스 및 오염방지막을 설치
- 중장비로 차집용 웅덩이 설치 또는 유수지 배수갑문 폐쇄로 오염 물질 차단·차집
- 긴급시 취수중단 판단을 위해 자동수질 분석 장치나 수질경보 시스템을 확인
- 정수장 유입에 대비하여 발견 장소 및 취수구에서 매 30분마다 시료채취 및 간이수질측정 실시





2) 원수수질 이상 징후 발견

- 자동수질측정시스템, 생물경보시스템, 육안감찰, 간이수질측정 등과 같은 각종 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질이상 징후를 발견
- 원수수질이상 발견 시 즉시 취·정수장에 대한 연속 수질정량분석 실시

3) 원수수질 분석

- 수질에 이상이 없을 때까지 최소 3시간 단위로 수질분석 실시
- 원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정수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취수지점변경, 비상취수체계 수립 하고, 취수중단판단 기준에 의해 취수중단

4) 취수중단

- 이상 물질 발견 또는 정수처리에서 제거가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경우
- 어류관찰수조, 생물경보 시스템관찰 결과 독극물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



2) 정수 수질분석

- 기준 적합: 원수 수질분석을 지속 실시
- 기준 초과: 사고 대책본부 설치·운영

3) 사고대책본부 설치 운영

- 수도사업자는 정수 수질기준 초과로 급수정지 등과 같은 주민일 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
- 사고 발생시 사고대응 내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
- 중·대형 정수장 사고 발생시
 - 시설용량 1일 10,000 m3 이상 시·도지사 대처가 필요한 사고
- 소형 정수장 사고발생시 사고대책반
 - 시설용량 1일 10,000 m3 시장·군수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

중앙상황실 상황실장 : 상하수도국장 상황실장 : 수도정책과장 환경부 장관 상황반장 : 수도정책과장 상황반장 : 담당사무관 사고현황 및 상황실장 : 보건환경국장 본부장 : 시·도지사 조치사항보고 대책반장 : 상수도사업본부장 상황반장 : 환경관리 (보건환경국장) 또는 지도과장 사고발생 시·도 시·군사고대책본부 본부장 : 시장·군수 본부장 : 시장·군수 대책반장 : 수도담당과장 대책반장 : 수도담당과장 발생 시·군 상황반 현장조사반 정수처리반 - 사고접수 및 전파, 보고 - 사고대처방향 보고 - 사고발생지역 환경조사 -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- 응급조치 및 급수정지 - 사고원인 및 피해조사 - 인력 및 장비동원 여부결정 - 시료채취 및 분석 - 방제방비 및 정수약품 공급 - 비상급수체계 구축 - 취수중단여부 결정 - 취수중단, 급수정지 및

재개 등 언론홍보

2) 위해성 판단

• 급수중단

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건강상 유해한 유·무기물질이 6시간이상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경우

심미적 영향물질의 수질기준을 24시간 간격으로 확인 검사를 실시 한 결과 연속하여 3회 이상 수질기준을 초과

• 1급 상황 판단기준

오염인지 후 24시간 이내 주민공지를 해야 하는 경우로 음용은 할수 없으나 잡용수로 사용가능



2) 2급 상황 판단기준

- •오염인지 후 30일이내 주민공지를 해야 하는 경우
- •"수돗물 수질오염 물질별 특성에 따른 상황 판단 기준"의해 판 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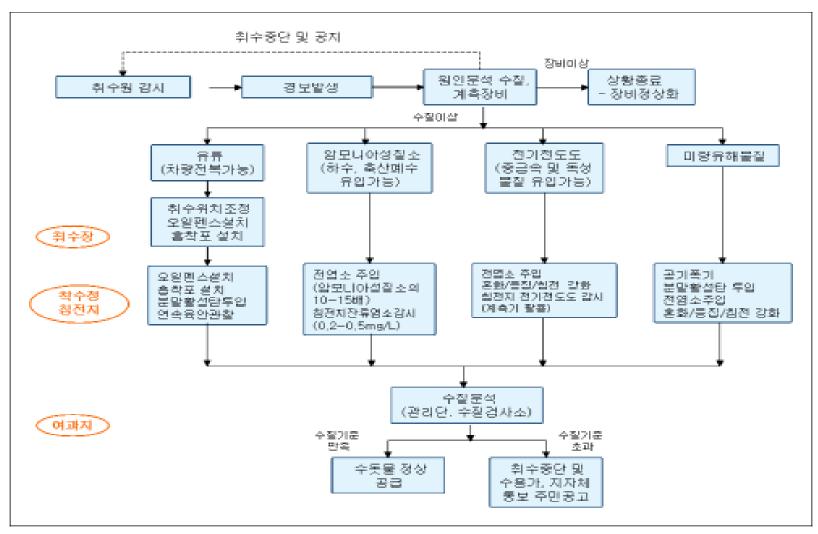
3) 위기경보 판단기준

등급	내 용	비고
관 심 (Blue)	- 상수원의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 사고	징후활동감지
주 의 (yellow)	- 수질오염 상황판단기준 : ॥급 상황 - 상수원의 대량오류발생으로 이·취미 발생 (기준초과)	협조체계가동
경 계 (orange)	- 수질오염 상황판단 기준 : I급 상황 - 유해물질유입으로 음용 시 인체에 유해가 추정되는 경우	대비계획점검
심 각 (Red)	- 수질오염 상황판단 기준 :급수 중지 - 유해물질 또는 소독부산물질이 6시간 이상 지속적 초과	즉 각 대 응 태 세 돌 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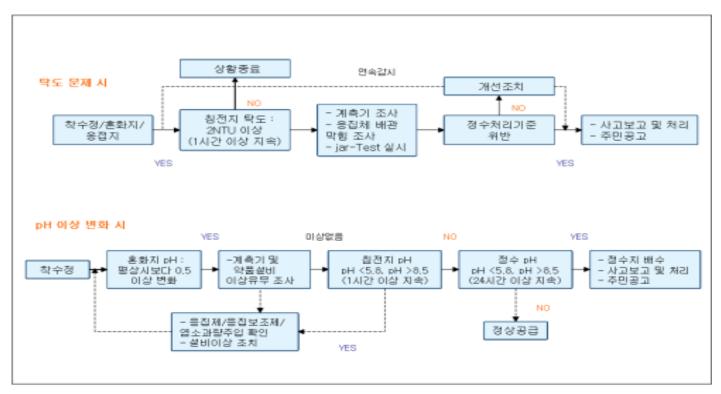
4) 주민 경보제 발령



- 8) 정수수질 이상 시 사고 대응
 - 취수장 오염물질 유입 시 대응방안



• 정수장 수처리 미흡 시 대응방안



9) 연속수질분석

• 기준초과:위해성으로

• 기준적합: 사고종료

10)사고종료: 주민공지

